

##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 제1장 2014년 항공교통서비스 현황

### 제3절 안전도 정보



### 제3절 안전도 정보

#### 1.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sup>2)</sup> 및 준사고<sup>3)</sup> 발생 현황

- ❖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은 매우 낮은 편이나 해마다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 항공기사고의 경우 2012년 2회, 2013년 3회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2012년 4회, 2013년 3회, 2014년 1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2014년 발생한 항공기 준사고 1건은 대한항공 B744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착륙접근 중 플랩 소음이 발생하며 항공기가 좌측으로 기울어 수동비행으로 전환하여 착륙한 것으로 현재 원인 조사 중임.

〈표 1-13〉 국적항공사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계
사고	0	3	2	1	1	2	9
준사고	1	3	4	3	7	4	24
총 계	1	6	8	4	8	6	33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항공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3) 항공법 제2조 제14호에 의하면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함.

## 2. 국내 취항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

- ❖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안전도 정보 주요내용은 2014년 항공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 결과,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IASA 항공사 안전등급 및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임.
- ❖ 이와 함께, 외교부에 지정한 여행금지국가(경보단계)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 2014년 항공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 ❖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 중 말레이시아항공 2건, 부홍항공(대만) 1건의 항공기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 ▶ 2014년 3월 8일 239명이 탑승하고 있던 말레이시아항공 B777기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됨.
  - ▶ 2014년 7월 17일 298명이 탑승하고 있던 말레이시아항공 B777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 격추를 당하여 전원 사망함.
  - ▶ 2014년 7월 23일 58명이 탑승하고 있던 부홍항공(대만) ATR-72기가 대만 가오슝에서 평후섬으로 향하던 중 악천후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48명이 사망함.

〈표 1-14〉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 항공기 사망 사고 현황

일자	항공기	항공사	등록번호	항공사 국적	사고발생 장소	내용	사망 자수
03.08	Boeing 777	말레이시아 항공	9M-MRO	말레이시아	인도양 부근	비행 중 실종	239
07.17	Boeing 777	말레이시아 항공	9M-MRD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 중 미사일에 격추	298
07.23	ATR 72-500	부홍항공	B-22810	대만	대만	마공공항에 악천후로 비상 착륙 시도 중 추락	48

주 :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자료 : Aviation Safety Network,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 나.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

- ❖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USOAP) 시행을 통해 ICAO 회원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 자격 및 항공안전 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있음.
  - ▶ USOAP은 1999년~2004년까지는 운항, 정비, 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
- ❖ USOAP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 2015년 3월 26일 기준 ICAO 지정 안전우려국은 <표 1-15>와 같이 13개 국가이며, 최근 태국이 ICAO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되었음.
  - ▶ 현재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태국항공사는 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 엑스, 비즈니스에어, 녹스쿠트항공이 있음.

〈표 1-15〉 ICAO 지정 안전우려국(2015. 3. 기준)

구분	해당국가
안전우려국 (13개국)	레바논, 말라위, 보츠와나, 시에라리온, 아이티,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루과이, 조지아, 지부티, 네팔, 카자흐스탄(에어아스타나항공), 태국(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 엑스, 비즈니스에어, 녹스쿠트항공)

주 : () 우리나라 취항 중인 항공사

자료 :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 다. 미국 FAA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 국제항공안전평가(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IASA)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적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한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임.
  - ▶ IASA는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주요 평가기준임.
  - ▶ ICAO 표준 이행여부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공동운항(Code share)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부과됨.
- \* ICAO 표준 이행 총족 시 1등급, 미총족 시 2등급 부여

〈표 1-16〉 FAA 항공안전평가 결과(2015. 4 기준)

등급	해당국가
1등급 (81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스, 벨기에, 베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케이만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네덜란드령 보네르, 사바, 성유스타티우스 포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동카리브 국가기구(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파키스탄, 파나마, 폐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사우스아프리카,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타이완, 태국, 트리니다드 &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2등급 (8개국)	방글라데시, 바르바도스, 쿠라카오, 가나,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세인트마르틴, 우루과이

자료 : FAA 홈페이지

#### 라.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는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Annex A, Annex B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 Annex A에 해당하는 국가의 소속 항공기들은 EU 지역내 운항 금지

\* Annex B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EU 지역내 운항 허가

〈표 1-17〉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A(2014. 12 기준)

구분	블랙리스트 항공사
Annex A (23개국, 310개 항공사)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베냉,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3개 항공사 조건부 제외), 인도네시아(5개 항공사 제외), 카자흐스탄(1개 항공사 조건부 제외), 키르기즈스탄,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잠비크, 네팔, 필리핀(2개 항공사 제외), 시에라리온, 상투메프린스페, 수단, 잠비아, 수리남(블루윙항공), 가나(메리디아항공)

자료 :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표 1-18〉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B(2014. 12 기준)

구분	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Annex B (8개국, 10개 항공사)	북한	AirKoryo Tu-204를 제외한 모든 기종
	가봉	AfriJet Falcon 50, Falcon 9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Gabon Airlines	B767-2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Nouvelle Air Affaires Gabon	CL-601, Hawker 800(HS-125-8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카자흐스탄	Air Astana B767, B757 A319, A320, A321을 제외한 모든 기종
	가나	Airlift International DC8-63F를 제외한 모든 기종
	마다가스카르	Air Madagascar B737-300, ATR72-500, ATR42-500, ATR42-320, DHC6-3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코모로스	Air Service Comores LET410 UVP를 제외한 모든 기종
	이란	Iran Air A300, A310, B737을 제외한 모든 기종
	앙골라	Taag Angloa Airlines B777, B737-7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자료 :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 마. 항공안전등급 현황(ICAO, FAA, EU)

- ❖ ICAO 항공안전평가, FAA의 항공안전평가, EU의 블랙리스트 결과는 <표 1-19>와 같음.
- ICAO 항공안전평가에 따른 안전우려국 중 국내 취항 하는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태국 및 카자흐스탄
- FAA 항공안전평가 2등급 항공사 중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인도네시아의 가루다인도네시아
- EU 블랙리스트 항공사 중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는 필리핀 에어아시아제스 트 및 카자흐스탄 에어아스타나항공

〈표 1-19〉 항공안전등급 현황(2015년 3월 기준)

국 가	ICAO우려국 '15.3.26 공시 (13개국)	FAA 2등급 '15.4.8 공시 (8개국)	EU블랙리스트 '14.12.11 공시 (27개국,320항공사)	비 고 (EU 블랙리스트)
가나		●	△	1개사, DC-8-63F EU운항
가봉			△	7개사, Falcon 50/Falcon 900/B767 등 EU운항
니카라과		●		
라이베리아			◎	ALL
레바논	O			
마다가스카르			△	1개사, B737(3) 등 EU운항
말라위	O			
모잠비크			◎	17개사
바르바도스		●		
방글라데시		●		
베니			◎	8개사
북한			△	1개사, 고려항공 EU제한적 운항
보츠와나	O			
상투메프린시페			◎	2개사
세인트 마르틴		●		
수단			◎	18개사
시에라리온	O		◎	7개사
아이티	O			
아프가니스탄			◎	4개사
앙골라	O		△	13개사, 보잉777(5),737(4) EU운항
에리트리아	O		◎	2개사

국가	ICAO 우려국 '15.3.26 공시 (13개국)	FAA 2등급 '15.4.8 공시 (8개국)	EU 블랙리스트 '14.12.11 공시 (27개국, 320항공사)	비고 (EU 블랙리스트)
우루과이	O	●		
수리남			◎	1개사
조지아	O			
리비아			◎	7개사
이란			△	1개사, A300(14), A310(8), B737(1) EU 운항
잠비아			◎	1개사
적도기니			◎	4개사
지부티	O		◎	1개사
코모로스			△	1개사, LET 410 UVP EU 운항
콩고			◎	8개사
콩고민주공화국			◎	50개사
쿠라카오		●		
네팔	O		◎	16개사
키르기즈스탄			◎	13개사
태국	O			
인도네시아		●	△	62개사, 국내 취항 중인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은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카자흐스탄	O		△	19개사, 에어아스타나는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나 B767/B757/A320/319/321 계열 기종은 EU 운항 허용
필리핀			△	30개사, 국내 취항 중인 필리핀 항공, 세부퍼시픽 항공은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제스트는 포함됨

주 : ◎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해당국가의 모든 항공사에 대해 EU 운항을 제한

△ EU 내 제한적 운항 허용(특정 항공사의 일부 기종 또는 일부 항공사만 운항 제한)

자료 : 국토교통부 운항 안전과 및 FAA

### 3.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 ❖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발표 기준으로 6개 국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음.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5년 7월 31일까지)
-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5년 7월 31일까지)
-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5년 7월 31일까지)
-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5년 8월 2일까지)
-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5년 8월 6일까지)